2024 북일여자고등학교 학생 출결 처리 지침

***원격수업(온라인수업) 기간도 기본적으로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출석 인정(공결) 처리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개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4)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경찰청 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8) 개인체험학습 : 학칙에 의거해 연간 15일 이내 가능. 단, 반일(4시간) 단위도 가능. 별도 지침으로 운영

(9) 의정활동 중 본회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

(10) 다음 사항

***생리결석** : 월 1회(총 8시간 기준) 출석 인정
-평상시 : 출석인정허가원(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확인)
-시험기간 : 출석인정허가원(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지각,조퇴의 경우도 월 1회로 간주하여 담임 선생님이 인정, 다만 조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께 문자 발송, 반복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보건교사 확인

***독감**
-유행하는 시기에는 보건실에 오는 경우 의심되면 당일 귀가 처리하고, 독감으로 판정되지 않아도 서류 절차 없이 출석 인정(공결 처리)
-등교 전 독감 의심되어 병원 다녀온 경우와 가족 중에 독감이 있어 열이 나고 감염 가능성이 있어 병원 진료하였으나, 독감 확진이 아니더라도 공결 처리 (병원 다녀온 근거가 있을 경우)
-시험 기간 :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감염성 또는 의증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가 있어야만 공결 처리

법정 전염병 (**유행성 결막염은 법정 전염병에 준해서 처리)
1. 1군 감염병 : 주로 먹는 물에 의해 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2. 2군 감염병 : 국가예방접종대상.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3. 3군 감염병 : 반복 유행 가능성.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한센병 등
4. 4군 감염병 : 새로 생겼거나 유입 우려가 있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포함.
5. 5군 감염병 : 기생충 감염에 의해 발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등
6. 지정 감염병 :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지정한 병.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첨규콘딜롬 등 외에도 의료관련감염병 6종, 장관감염증 20종, 급성호흡기함염증 9종,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11종이 포함

나. 질병 결석 처리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교감 전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보호자 의견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함. (결석 신고서는 계속 제출)
- 등교시간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다. 미인정결석 처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 연행, 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개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라. 기타 결석 처리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 및 의정.정당 활동(정당가입자의 정당활동 포함)

마. 지각、조퇴、결과 처리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과 하교시각(16:20)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10분 이상 불참한 경우.
단, 교과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함.
-교과교사 ⇒ 담임에게 전달(NEIS 기록)
(4)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
(5) 질병지각, 질병조퇴, 질병결과 처리 절차는 질병 결석에 준함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 질병, 기타의 순으로 처리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안은 수업결손이 많은 경우로 입력하여 처리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바. 특기사항 기록

(1) 반드시 입력 :

① 개근

② 장기결석 사유[연속하여 4일 이상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사유[횟수와 무관하게 모두 기록], 단,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 및 의정.정당 활동으로 인한 기타결석일 경우 '교외활동(n일)'로 기재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제4호, 제5호, 제6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 결정일(2,3학년 학생만 해당)

(2) 입력할 수 있는 항목 :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입력할 수 있음

① 같은 사유로 3번 이상 단기 결석이 있다면 그 주된 사유

② 5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 혹은 조퇴, 혹은 결과 사유

(3) 입력 불가 항목

① 해외봉사활동 ② 해외어학연수 ③ 교외대회 참가 ④ 출석인정결석(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 외 입력하지 않음)

사. 개인체험학습 길라잡이

(1) 개념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2)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24.1.2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해설 및 기재요령(24.2.8.)

(3) 기본 원칙 :

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15일 이내 실시 가능

②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③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 확인 철저

④ 개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보호자가 수업일 기준으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수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⑤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이용 가능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 자녀지원 - 교육활동 신청 - 교외체험학습신청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⑥ 개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함

⑦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개인체험학습 가능 기간(연간 최대 15일)을 초과한 경우
- 개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⑧ 다음의 경우 개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함.

-가족 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됨)

⑨ 다음의 경우 개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함.

-교내 정기고사 기간	-고사후 이의제기 및 성적 확인 기간(고사 직후 1주일)
-학기의 개학 직후 1주일 이내	-원격수업(온라인수업) 기간
-기타 : 학교장이 특정한 기간	

◈ 제출 서류 및 처리 과정

1. 제출 서류

가. 개인체험학습 관련

-개인체험학습신청서 : **최소 3일전까지 신청 완료**, 학급 담임이 보호자에게 반드시 확인후 처리

-개인체험학습결과보고서 : 사후 제출

나. 결석(질병,기타)

-결석신고서 : (증빙 자료와 함께) 사후 제출

다. 출석인정 결석(생리결,공결,경조사결)

-출석인정허가원 : (사전 혹은) 사후 제출

2. 처리 과정

가. 개인체험학습

-개인체험학습신청서 : 학생의 사전 신청, 결재{☞담임-부장(학년부장)-교감[전결]} 후에 체험학습 실시

-개인체험학습결과보고서 : 학생이 근거자료와 함께 사후 제출

☞사후에 신청서와 보고서를 함께 묶어 월별로 결재{☞담임-부장(학년부장)-교감[전결]}

나. 결석신고서(질병결석, 기타결석)

☞사후에 월별로 결재{☞담임-부장(학년부장)-교감[전결]}

다. 출석인정허가원(생리결석,공결,경조사결)

☞사후에 월별로 결재{☞담임-부장(학년부장)-교감[전결]}

라. 학급 담임교사는 매달 출결 서류를 수합, 정리하여 학생 확인서명 후 내부결재화

마. 매달 NEIS '월 출결마감' 후 출결서류는 학년에서 수합하여 보관하고, 학기말에 교무운영부로 모두 이관. 단,질병조퇴, 질병지각, 질병결과 서류는 담임교사가 자체 처리

3. 온라인(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신청 및 처리 : 학생 결석 신고 및 개인체험학습 신청 관련(24.9.23부터 시행)

가. 개인체험학습 신청

① 신청서 : 수업일 기준으로 최소 3일전 신청, 기간/장소(구체적인 '지자체명'까지 기입)/인솔자/체험학습 계획(요약식 혹은 서술식)을 반드시 입력

② 보고서 : 수업일 기준으로 사후 5일 안에 신청, 기간/장소/체험학습 내용(요약식 혹은 서술식)/증빙자료(사진,입장권,결과물 등) 첨부

③ 온라인 신청(사전 신청)시 보고서 제출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나. 결석 신고

① 질병 결석, 기타 결석 : 증빙 자료 첨부와 함께 수업일 기준으로 사후 5일 이내 제출

(병결의 경우 진단서,처방전,약봉지 등 입증 가능 자료 /단, 고사 기간은 더 강화된 자료 제출)

② 출석 인정 허가 : 생리결, 공결/경조사결

(입증 가능 자료 첨부와 함께 수업일 기준으로 사후 5일 이내 제출.

단, 생리결(월1회)의 경우에는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의 문구 기입도 가능)

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종이 서류의 별도 제출을 하지 않음

라. 상신 및 승인 단계 : 담임-학년부장-교무운영부장-교감(전결)

◈ 본교의 학생 지각 처리

1. 학생의 지각 처리 시점(기준) : 아침맞이 장소(08시 15분 이후), 교실 도착(08시 20분 이후)
2. 지각 처리 내용
 1) 미인정 지각 : 고의, 태만, 늦잠, 개인의 부주의, 학원 수강,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2) 질병 지각 : 질병에 따른 지각
 3) 기타 지각 :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② 기타 합당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 (☞'기타 지각' 처리)
 1) 천재지변, 계획.예정에 없는 행사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
 2) 교통수단(버스, 전철, 통학버스 등)의 고장이나 연착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3) 단, 개인 승용차 등교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처리함.
4. 기타 합의가 안 되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학년별로 학년부장이 사안을 모두 수합한다.
 2) 관련 소위원회(교감,교무운영부장,학년부장)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한 후 처리 방침을 정한다.
 3) 방침이 정해지면 사안에 대해 모두가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부칙 (2024.10.1.)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1]

결재	부장	교감	교장
		전결	

출석 인정 허가원

제 학년 반 번
성 명 :
사 유 :
출석인정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일간)

본인은 상기와 같이 결석(하고자, 하였기에) 보호자 연서로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오니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
보호자 ㊞

20 년 월 일

□ 담임 의견(확인) : 보호자와 연락하여 확인함.
(기타:)

담임 ㊞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 생리결석 시 사유에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을 자필로 기재

[양식2]

결재	부장	교감	교장
		전결	

결석 신고서

제 학년 반 번
성 명 :
결석사유 :
결석기간 :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일간)

본인은 상기와 같이 결석하(겠,였)으므로 보호자 연서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학 생 ㊞
보호자 ㊞

20 년 월 일

첨부 : 진단서(유, 무)

담임 ㊞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양식3]

개인체험학습 신청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기간	1일 단위	신청 기간(보호자)	202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출석인정 기간(담임)	202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반일 단위	신청 시간(보호자)	202 년 월 일(오전, 오후) ~ 202 년 월 일(오전, 오후) / ()일간	
		출석인정 기간(담임)	202 년 월 일(오전, 오후) ~ 202 년 월 일(오전, 오후) / ()일간	
학습형태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만 가능〉 ()			
목적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관계	연락처	
개인체험 학습계획				

위와 같이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개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시키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개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 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하며, 위와 같이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유의 사항

1. 체험학습의 목적 및 학습계획(일정, 장소, 활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참가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 및 승인
2.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를 연락(전화 또는 문자) 받은 후 실시
3. 개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

[양식4]

개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기간	1일 단위	신청 기간(보호자)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출석인정 기간(담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반일 단위	신청 시간(보호자)	20 년 월 일(오전, 오후) ~ 20 년 월 일(오전, 오후) / ()일간	
		출석인정 기간(담임)	20 년 월 일(오전, 오후) ~ 20 년 월 일(오전, 오후) / ()일간	
학습형태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만 가능〉 ()			
목적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관계	연락처	
개인체험 학습 내용				

위와 같이 개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보고서 작성 유의 사항: 1. 개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2. 사진, 입장권, 참가확인서, 학습 결과물 등 증빙자료 첨부
3. 체험학습 종료 후 수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 제출

[양식5] 코로나19 관련 방문 확인서

방 문 확 인 서

아래 학생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20 년 ()월 ()일,

본 선별진료소(병원, 보건소 등)에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학생

북일여자고등학교 학년 반 이름 :

발행일 : 20 년 월 일

기관 또는 의사명 : (서명)